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664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, 중앙정부 및 민간과 공동으로 유망산업 펀드를 조성·운영하고자 함
- 나.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펀드조성을 위한 기금출자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,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자근거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
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
 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
- 나. 추진방향
- 전문운용사를 활용하여 유망한 중소·벤처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지원
 - 정부자금(한국모태펀드)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인 운용
 -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,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활용
- 다. 출자의 필요성 : 코로나19의 여파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

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

| 출자분야 | 출자 필요성 |
|---------|--|
| 4차 산업혁명 |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여 서울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|
| 스마트시티 | 교통·환경·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관련기업에 투자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도시문제 해결 |
| 문화콘텐츠 | 전후방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우수 콘텐츠 보유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를 통한 산업 활성화 |
| 창업지원 | 원천기술 기반 첨단제조업 및 첨단 비즈니스 분야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혁신창업 활성화 |
| 재도전지원 |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, 실패 후 재기도전하는 창업자에 투자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|
| 바이오 | 바이오 헬스케어, 생명공학 등 서울의 바이오산업 활성화 |

라. 출자대상 :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벤처투자조합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
- 모태조합 : 한국모태펀드로서, 한국벤처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
- 신기술사업투자조합 :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

마.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금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옥창석 (☎2133-5224)